

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 제4호 “가”목 내지 “다”목을 “나”목 내지 “라”목으로 하고 “가”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환경 보전 정책 보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직장 운동 경기 부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49
------	-----

2003년 3월 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및 제안일자 : 200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(2003년 3월 17일 상정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이철수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(2003.1.10) 및 동조례 시행규칙(2003.1.15)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부서명칭, 직명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.

- 서울특별시 직장 운동 경기 부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물품 관리 조례
-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-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
-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
- 서울시 민대상 조례
-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
- 서울특별시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-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
- 서울특별시 「열린 시정」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

3. 전문위원 겸 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태호)

- 지난 2003. 1. 1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부서명칭, 직명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직장 운동 경기 부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